



제343회 임시회

2015.10.19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(중학구)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 
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(중학구)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 
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15년 10월 02일

○ 회부일자: 2015년 10월 05일

## 3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(중학구)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 고시」 중,
- 자연부락명을 삭제하여 중학교 학교군(구)을 명확하게 조정하였으며, 해당 시·군의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반영
  -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및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를 인근학교와 공동학구 지정 및 중학교군(구) 조정
  -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및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양성중학교, 이월중학교, 삼성중학교, 단성중학교 학구를 인근학교의 학구와 공동학교군 또는 공동학구로 조정

## 4. 주요내용

- 청주시 자연부락 명칭 삭제와 그에 따른 청주시 낭성면 인경리를 제1 학교군과 미원중학구에서 미원중학구로, 내수읍 원통리를 제2학교군과 내수중학구에서 내수중학구 및 제2학교군 공동학군(구)으로 조정

- 생활권과 대중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구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평리를 오송중학구와 공동학구로, 오창중학구인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를 제5학교군으로 조정
- 진천 덕산중학구인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를 음성군 동성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조정
-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을 위해 농어촌 거점중학교인 양성중학교 학구를 충주시 학교군인 중앙탑면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공동학구로, 이월중학교 학구를 진천중학구와 광혜원중학구를 포함하여 공동학구로, 삼성중학교 학구를 무극중학구 및 대소중학구를 포함하여 공동학구로, 단성중학교 학구를 단양중학구를 포함하여 공동학구로 지정
- 청주시 동 및 읍·면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증평군 증평읍 학교군인 청원군(북이면)을 청주시(청원구 북이면)로 괴산군 청천중학구인 청원군(미원면) 및 어암리(쇠바우)를 청주시(상당구 미원면), 어암리(어암1리 3반)로 변경
- 충주시 학교군인 가금면을 충주시 동 및 읍·면·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중앙탑면으로 변경

## 5. 검토의견

- 본 고시개정안은 자연부락명을 삭제하여 중학교 학교군(구)을 명확하게 조정하였고, 관할구역에 관한 해당 시·군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,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농어촌 거점별 우수학교 육성 및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군(구)을 조정하려는 것으로,

- 청주시 자연부락 명칭 삭제와 그에 따른 ‘청주시 낭성면 인경리’ 를 청주시 제1학교군과 미원중학구에서미원중학구로, ‘내수읍 원통리’ 를 제2학교군(청애안, 숲안, 통천)과 내수중학구(그외 지역)에서 내수중학구 및 제2학교군 공동학군(구)로 조정하였고.
- 생활권과 대중교통 여건을 고려한 중학구 조정은,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구인 ‘청주시 흥덕구 궁평리’ 를 오송중학구와 공동학구로, / 오창중학구인 ‘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’ 를 청주시 제5학군으로, / 진천 덕산중학구인 ‘진천군 덕산면 두촌리’ 를 음성군 동성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조정하였음.
-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을 위한 학구 조정은, 앙성중학교 학구를 충주시 학교군인 중양탑면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공동학구로, / 이월중학교 학구를 진천중학구와 광혜원중학교를 포함하여 공동학구로, / 삼성중학교 학구를 무극중학구 및 대소중학교를 포함하여 공동학구로, / 단성중학교 학구를 단양중학교를 포함하여 공동학구로 지정하였으며,
- 청주시 및 충주시의 조례개정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증평군 증평읍 학교군인 ‘청원군(북이면)’ 을 ‘청주시(청원구 북이면)’ 로, / 괴산군 청천중학구인 ‘청원군(미원면) 및 어암리(쇠바우)’ 를 ‘청주시(상당구 미원면) 및 어암리(어암1리 3반)’ / 충주시 학교군인 ‘가금면’ 을 ‘중양탑면’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### 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#### 제68조 (중학교 입학방법)
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·학교군·중학구 및 추천방법은 교육감이 시·도의 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#### 제84조 (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)

-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군은 시·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·도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